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58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이성운
김원이·박수현·윤준병
박지원·이개호·김영진
김영배·전종덕·송옥주
서미화·문금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하지만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하여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과 중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 법과 먼섬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목과 나목의 직접지불금
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
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단서 신설>	8. ----- ----- ----- ----- ----- ----. 다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목과 나목의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